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096호

##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제품 실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2024. 04.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지역가전제품 실증 수행
  - (지원기간) 협약일 ~ 2024. 06. 21.
  - (지원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이 가능한 역내 기업
  - (지원규모) 총 40,500천원, 1개社
  - (지원내용)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
  - (실증조건)
    -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인 국산 AI반도체(EN675 or EN677 등)가 적용된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실증 수행
    - ※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할 경우 선정 제외
    - 광주광역시 內 기업 대상(사업자등록증에 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역내에 있을 것)
  - (기타)
    - 본 사업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실증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0008호)’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제품 실증사업으로 시제품 개선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sup>1)</sup>
- 주1) 단 기업 자체에서 개선하는 것은 무관

## 2

## 추진절차 및 일정

| 단계        | 일정                   | 비고                                    |
|-----------|----------------------|---------------------------------------|
| 모집 공고     | 공고일 ~ '24.05.10      |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 지원신청 및 접수 | ~ '24.05.10, 15:00 限 | 지원신청서 접수<br>(신청기업 →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      |
| 서류검토      | '24.05월 중            | 서류검토<br>(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등)          |
| 선정평가      | '24.05월 중            | 발표평가                                  |
| 협약 및 사업수행 | 협약일 ~ '24.06.21      | 협약 및 사업수행                             |
| 사업수행 중간점검 | '24.05월 예정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br>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 최종평가      | '24.06.21            |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
| 사업비 집행    | ~ '24.6.28           | 사업비 집행                                |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lt;지원일정 및 절차 관련 참고사항&gt;

-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진행
-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선정평가 후 선정기업에 별도 배포 예정

## 3

## 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대면평가

## ○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목표 및 필요성 | ○ 제품개발의 필요성(10)<br>○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br>○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 | 30 |
| 실증계획     | ○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5)<br>○ 실증 제품과 광주지역가전산업과의 부합성(15)             | 30 |
| 기업역량     | ○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10)<br>○ 제품 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10)                  | 20 |
| 기대효과     | ○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 및 수출효과(10)<br>○ 사업화를 통해 발생하는 고용창출 효과(10)          | 20 |

## ○ (지원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구축한 인프라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4

###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 05. 10.(금), 15시 限

○ (신청방법)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 소속             | 담당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
|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 윤병규  | 062-602-7273 | bkyun@gjtp.or.kr |
|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 이은영  | 062-602-7276 | ley@gjtp.or.kr   |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제출여부      |
|-----------------------------------------------------------------------------------------------------|-----------|
| ① 기업지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필수        |
| ②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첨부1)                                                   | 필수        |
| ③ 사업참여 협약서 1부 (첨부2)                                                                                 | 필수        |
| ④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 필수        |
| 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필수        |
|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필수        |
|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발급기준)<br>-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의 경우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 필수        |
|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필수        |
| ⑨ 사업수행을 위한 견적서 1식                                                                                   | 필수        |
| ⑩ 기업/제품 카달로그(브로셔) 및 기업/제품 소개서(설명서)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⑪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신안 등) 보유 현황 증빙 1식                                                         | 해당 기업에 한함 |

※ 첨부파일 양식은 신청서 내 포함되어 있음

※ 과업지시서는 선정평가 및 공급기업 매칭 시 활용 예정

-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되며,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관리·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후관리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